

#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8. 3. 2  
내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2월 20일 이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8년 2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2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1차(98. 3. 2) 내무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한기영)

### 가. 제안이유

시민의 체력증진 도모 및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과 상이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기금은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하고,
- 목표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기금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함(안 제3조).

- 시의 출연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은 시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회계년도의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시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체육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담당계장으로 함(안 제5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안봉환)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기금조성 기간을 종전은 '97년부터 3년간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기금을 조성토록 한 것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는등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조례 제2조 1항 중 단서조항에 있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수정안의 요지(구두동의)

가. 수정이유

기금은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이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안 제2조 제1항)고 규정하고 또한 기금은 매회 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안 제2조 제2항)라고 출연기간과 조성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 제2조 제1항 기금조성액이 미달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중복성을 띠어 불필요.

나. 수정주요골자

안 제2조 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함.

7. 심사결과 : 일부 수정의결

8. 기타사항 : 없 음

붙임 : 1.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수정안조문대비표

##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8. 3. 2

제안자 : 내무위원회 위원장

### 1. 수정이유

기금은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이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안 제2조 제1항)고 규정하고 또한, 기금은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안 제2조 제2항)라고 출연기간과 조성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 제2조 제1항 기금조성액이 미달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중복성을 띠어 불필요.

### 2. 수정주요골자

안 제2조 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함.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이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p> <p><u>다만, 목표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제2조(기금의 조성) ① . . . . .</p> <p>. . . . .</p> <p>. . . . .</p> <p>. . . . .</p> <p>(삭제)</p>